

서울고등법원 2022. 6. 7 선고 2021나2052748 판결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6. 7 선고 2021나205274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18가합55425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3. C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주현, 김추

피고, 피항소인 1.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후 담당변호사 정상원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2. 4. 28.

판결선고 2022. 6. 7.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18가합55425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원고 A 주식회사에 347,526,400원, 원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각 170,6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9. 10.부터 2022. 6.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에 대한 나머지 항소,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서울특별시 사이의 소송 총비용 중 9/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대한민국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① 원고 A 주식회사에 11,578,825,516원 및 그중 1,376,003,2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4.부터, 942,407,960원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9,260,414,356원에 대하여는 2018. 7. 6.부터, ② 원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이하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은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에 각 5,688,103,822원 및 그중 675,998,4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4.부터, 462,679,020원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4,549,426,402원에 대하여는 2018. 7. 6.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서울특별시, 예비적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① 원고 A에 1,643,574,400원 및 그중 774,758,400원(부분사용 운영비)에 대하여는 2017. 12. 4.부터, 868,816,000원(지체상금 감액분)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② 원고 B, C에 각 807,145,800원 및 그중 380,620,800원(부분사용 운영비)에 대하여는 2017. 12. 4.부터, 426,525,000원(지체상금

감액분)에 대하여는 2018. 4. 14.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에 누락된 “별지 1”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14쪽 9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지체상금 과지급금에 대한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12차수 계약에 규정된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원은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지체상금을 예정한 동기, 공사도급액에 대한 지체상금의 비율, 지체상금의 액수, 지체의 사유,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2차수 계약에 규정된 지체상금 약정에 의한 지체상금 3,443,732,000원¹⁾은 부당히 과다하고, 이를 그 80% 상당액인 2,754,985,600원(= 3,443,732,000원 × 80%)²⁾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들은 이 사건 12차수 계약에 따른 종합시운전[부하시운전 3개월(2016. 9. 22.부터 2016. 12. 21.까지), 신뢰성운전 3개월(2016. 12. 22.부터 2017. 3. 21.까지)] 중 신뢰성운전 단계에서 스트레이너 노즐 및 여재 폐색이 발생하여 보증수질 초과가 예상되자 2017. 2. 20. 종합시운전을 중단하였다. 그 후 여재 교체, 시설개선공사 등을 진행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부분부하운전으로

처리시설을 유지하였고, 2017. 12. 1.부터 2018. 2. 28.까지 신뢰성운전을 재시행하고 2018. 3. 3. 이 사건 12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다.

② 원고들은 이 사건 12차수 계약에서 정한 준공기한(2017. 4. 28.)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최종 신뢰성운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준공기한을 준수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 지체일수가 309일까지 이른 데에는 신뢰성운전의 재시행을 위해 동절기 3개월, 즉 2017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인바, 지체에 따른 불이익을 전적으로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조달사업으로서 준공기한의 준수가 강조되는 이 사건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12차수 계약에 따라 피고 서울시로부터 수령하는 공사대금 11,319,910,000원과 비교할 때 피고 서울시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지체상금은 위 공사대금 대비 약 30%에 이르는 금액이다.

④ 공공조달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적지 않은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공공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2017. 12. 28.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가 개정되어 지체상금률이 종전보다 1/2만큼 감경되었는바, 비록 이 사건 12차수 계약은 지체상금률 조항이 개정되기 이전에 체결된 것으로서 감경된 지체상금률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체상금률 조항의 개정 취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 따라서 피고 서울시는 부당이득금으로 원고 A에 347,526,400원, 원고 B와 C에 각 170,610,000원³⁾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서울시가 약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8. 9. 10.(민법 제748조 제2항 및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약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부터 약의의 수익자로 보며,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지는데, 피고 서울시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이전에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위 부분을 초과하여 구하는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부터 피고 서울시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22. 6. 7.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 17쪽 7행의 “초과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3.가.4) 부분사용 운영비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

“⑦ 원고들은 피고 서울시가 시설현대화시설(1처리장)을 부분사용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시설들(2내지 4처리장)만으로는 적법한 하수 처리가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나, 시설현대화시설에 종합시운전을 위한 하수가 공급된 2016. 9.경 이전 나머지 시설들의 일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약 110만 톤에서 140만 톤 사이였는데, 그 후 종합시운전, 시설개선공사 등을 위해 시설현대화시설에 하수가 공급된 2017. 12.경까지 나머지 시설들의 일일 평균 하수처리량도 약 100만 톤에서 170만 톤 사이로, 그 처리량에 있어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바, 시설현대화시설에 하수 공급이 중단되었던 기간(2017. 4. 29.부터 2017. 5. 11.까지) 동안 나머지 시설들에서 처리한 하수 중 법적 방류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⑧ 종합시운전 중단 이후 시설현대화시설에서 원고들의 시설개선공사와 병행하여 일부 하수 처리(부분사용이 아닌 부하시운전)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그 처리량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하루 15만 톤 가량보다 적었던 점(다만 시설개선공사의 진행 정도에 따라 그 처리량이 늘어나기는 하였으나 이는 부하시운전 등 종합시운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 17쪽 9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공사의 착공, 대가의 지급 등 계약 이행과 관련한 부분은 피고 서울시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상 권리의무를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원고들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울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들과 피고 서울시 사이의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서울시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피고 서울시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홍승면, 판사 이재신, 판사 김영현

[별지 1]

계약체결일	변경내용	계약금액	변경금액	준공기한	착공일	준공일	수정번호
2009-02-12	최초(총괄)	260,119,700,000			2009-02-13	2014-01-18	갑3-1
2009-02-12	1차수 계약	13,925,000,000			2009-02-13	2009-11-08	갑3-1
2009-08-21	2차수 계약	40,163,033,000			2009-08-24	2010-06-29	갑3-2
2009-11-06	1회 변경(총괄)	259,155,800,000	-963,900,000		2009-02-13	2014-01-18	갑3-3
2009-11-06	1차수 계약변경	16,552,000,000	2,626,000,000	연장	2009-02-13	2010-01-30	갑3-3
2010-01-29	2회 변경(총괄)	258,930,800,000	-225,000,000		2009-02-13	2014-01-18	갑3-4
2010-02-18	3차수 계약	34,311,000,000			2010-02-18	2011-02-17	갑3-5
2010-05-28	3회 변경(총괄)	260,052,700,000	1,121,900,000		2009-02-13	2014-01-18	갑3-6
2010-06-29	3차수 계약변경	34,030,000,000	-281,000,000		2010-02-10	2011-02-17	갑3-7
2010-08-02	4회 변경(총괄)	285,875,700,000	25,823,000,000		2009-02-13	2014-01-18	갑3-8
2010-12-15	5회 변경(총괄)	292,910,800,000	7,035,100,000		2009-02-13	2014-01-18	갑3-9
2010-12-15	3차수 계약변경	34,098,000,000	68,000,000		2011-02-18	2011-02-17	갑3-9
2011-04-13	4차수 계약	26,697,000			2011-04-13	2012-04-11	갑3-10
2011-12-14	6회 변경(총괄)	299,718,400,000	6,807,600,000		2009-02-13	2014-01-18	갑3-11
2011-12-14	3차수 계약변경	34,058,500,000	-39,500,000	연장	2011-02-18	2011-12-31	갑3-11
2012-02-17	5차수 계약	17,175,000,000			2012-02-20	2013-02-13	갑3-12
2012-09-20	6차수 계약	18,100,000,000			2012-09-25	2013-06-29	갑3-13
2013-01-30	7회 변경(총괄)	305,516,000,000	5,797,600,000		2009-02-13	2014-01-18	갑3-14
2013-02-28	7차수 계약	18,130,000,000			2013-03-04	2013-12-30	갑3-15
2013-06-28	8차수 계약	17,383,000,000			2013-06-28	2014-01-18	갑3-16
2013-12-18	8회 변경(총괄)	305,921,000,000	405,000,000		2009-02-13	2014-01-18	갑3-17
2013-12-18	8차수 계약변경	12,383,000,000	-5,000,000,000	연장	2013-06-28	2014-04-30	갑3-18
2013-12-31	8차수 계약변경	12,700,000,000	317,000,000		2013-06-28	2014-04-30	갑3-19
2014-03-10	공기연장(총괄)	305,921,000,000		연장(총괄)	2009-02-13	2015-02-28	갑3-20
2014-03-17	9차수 계약	38,880,000,000			2014-03-17	2015-02-18	갑3-21
2014-05-28	9회 변경(총괄)	305,962,000,000	41,000,000		2009-02-13	2015-02-26	갑3-22
2014-05-28	9차수 계약변경	38,793,868,000	86,132,000		2014-03-17	2015-02-18	갑3-22
2015-02-09	10회 변경(총괄)	322,005,000,000	16,043,000,000	연장(총괄)	2009-02-13	2016-02-28	갑3-23
2015-03-12	10차수 계약	48,500,000,000			2015-03-13	2015-12-15	갑3-24
2015-12-14	11회 변경(총괄)	335,283,000,000	13,278,000,000	연장(총괄)	2009-02-13	2017-04-28	갑3-25
2015-12-14	10차수 계약변경	48,323,000,000	-177,000,000		2015-03-13	2015-12-15	갑3-25
2016-01-05	11차수 계약	43,947,000,000			2016-01-05	2016-12-17	갑3-26
2016-08-26	11차수 계약변경	43,930,000,000	-17,000,000		2016-01-05	2016-12-17	갑3-27
2016-12-16	12회 변경(총괄)	329,705,000,000	-5,578,000,000		2009-02-13	2017-04-28	갑3-28
2016-12-27	12차수 계약	16,290,000,000			2016-12-27	2017-04-28	갑3-29
2016-12-27	13차수 계약	2,405,132,000			2016-12-27	2017-04-28	갑3-30
2017-04-28	13회 변경(총괄)	329,784,000,000	79,000,000	연장(총괄)	2009-02-13	2017-08-31	갑3-31
2017-04-28	12차수 계약변경	11,805,800,000	-4,484,200,000		2016-12-27	2017-04-28	갑3-31
2017-04-28	13차수 계약변경	6,968,332,000	4,563,200,000	연장	2016-12-27	2017-08-31	갑3-32
2017-08-31	공기연장			연장(총괄)	2009-02-13	2017-10-31	갑3-33
2017-08-31	13차수 공기연장			연장	2016-12-27	2017-10-31	갑3-33
2017-10-31	14회 변경(총괄)	330,486,000,000	702,000,000		2009-02-13	2017-10-31	갑3-34
2017-10-31	12차수 계약변경	11,620,500,000	-185,300,000		2016-12-27	2017-04-28	갑3-34
2017-10-31	13차수 계약변경	7,855,632,000	887,300,000		2016-12-27	2017-10-31	갑3-35
2018-05-08	15회 변경(총괄)	329,943,000,000	-543,000,000		2009-02-13	2017-10-31	갑3-36
2018-05-08	12차수 계약변경	11,077,500,000	-543,000,000		2016-12-27	2017-04-28	갑3-36

1) 원고 A 1,737,632,000원, 원고 B과 C 각 853,050,000원

2) 원고 A 1,390,105,600원($= 1,737,632,000\text{원} \times 80\%$), 원고 B과 C 각 682,440,000원($= 853,050,000\text{원} \times 80\%$)

3) 원고 A 347,526,400원($= 1,737,632,000\text{원} - 1,390,105,600\text{원}$), 원고 B과 C 각 170,610,000원($= 853,050,000\text{원} - 682,440,000\text{원}$)